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재섭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10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4.

발 의 자 : 김재섭 · 서천호 · 최수진
이헌승 · 권영세 · 김상훈
조은희 · 엄태영 · 강승규
고동진 · 김석기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이 궐위되면 보궐선거 등을 통해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원직에 궐원이 발생할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의 차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음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국정운영에 전념할 필요가 있는 국무위원이 입법부 구성원의 지위를 함께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있음.

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운영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비례대표 의석은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제2항 및 제136조제4항 신설 등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전단 중 “제3항에”를 “제4항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7항) 중 “제4항에”를 “제5항에”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공직선거법」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할 수 없다. 다만, 해당 의원의 의원직에 궐원이 생기는 경우 같은 법 제200조에 따라 그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3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할 수 없는 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하게 된 경우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.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검 직 금지) ① (생 략)	제29조(검 직 금지) ① (현행과 같 음)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공직 선거법」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할 수 없다. 다만, 해당 의원의 의원직에 궐원이 생기는 경우 같은 법 제200조에 따라 그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· ③ (생 략)	③ · 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(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 · 지명 등에 따라 임명 · 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)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(이하 “윤리심사자문위원회”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	⑤ -----제4항에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. 이
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
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⑤·⑥ (생략)

⑦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원
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
(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
천·지명 등에 따라 임명·위
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
고한 날부터 15일 이내)에 겸
직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
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
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
⑧ (생략)

제136조(퇴직) ① ~ ③ (생략)

<신설>

-----.

⑥·⑦ (현행 제5항 및 제6항
과 같음)

⑧ -----제5항에-----

⑨ (현행 제8항과 같음)

제136조(퇴직) ① ~ ③ (현행과
같음)

④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
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
겸할 수 없는 의원이 국무총리
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하게
된 경우에는 의원직에서 퇴직
한다.